

## 『新唐書』 권77, 后妃傳下 역주\*

진 징(斬晶)\*

### 肅宗張皇后

肅宗의 廢皇后 庶人 張氏는 鄧州 向城[縣] 사람인데, 新豐[縣]으로 집을 옮겼다[家徙].<sup>1)</sup> 조모 竇氏는 昭成皇后(즉 玄宗의 모후)<sup>2)</sup>의 여동생이다. 현종이 어렸을 때 소성황후를 여의고 이모를 모친으로 여겼는데, [두 씨가] 길러 사랑하는 것이 돈독하고 어그러짐이 없었다. 황제가 즉위하여 鄧國夫人으로 봉하고 친하게 총애하는 것이 비할 바 없었다. [등국부인의] 다섯 아들은 去惑·去疑·去奢·去逸·去盈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높은 관직에 올랐다. [張]去盈은 常芬公主(즉 현종의 딸)에게 장가들었고<sup>3)</sup> [張]去逸이 황후 [장씨를] 낳았다.

숙종이 忠王이었을 때 韋元珪의 딸을 받아들여 孺人<sup>4)</sup>으로 삼았다. 태자로 세워지자 유인을 [太子]妃로 삼고 그녀를 良娣<sup>5)</sup>로 삼았다. 위비의

\* 『新唐書』 권77, 后妃傳下, 中華書局, 3497~3512쪽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하 중국 정사는 中華書局標點本 이용함.

\*\*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1) 『구당서』 권52, 肅宗張皇后傳, “本南陽西鄂人, 後徙家昭應”(2185쪽).

2) 『신당서』 권5, 玄宗本紀,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諱隆基, 睿宗第三子也. 母曰昭成皇后竇氏”(121쪽).

3) 『신당서』 권83, 常芬公主傳, “下嫁張去奢”(3657쪽).

4) 『구당서』 권43, 職官志2, 尙書吏部, 司封郎中 조, “凡親王, 孺人二人, 視正五品, 媵十人, 視正六品”(1821쪽). 『신당서』 권46, 百官志1, 1188~1189쪽.

5)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司封郎中 조, “皇太子良娣二員, 正三品. 良媛六員, 正四

형 [韋]堅이 李林甫에게 모함을 받아 죽자<sup>6)</sup> 태자는 두려워서 위비와 연을 끊길 청하고 평복을 입혀[毀服] 禁中에 가두었다.<sup>7)</sup> 安祿山이 反하자 賊에게 함몰되어 [숙중] 至德 연간(756~758)에 홍거하였다.

비로소 위비와 연이 끊어지자 [張]良娣가 태자를 전적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지혜롭고 언변이 있어 [태자의] 뜻을 잘 알아채고 부합하였다. 현종이 서쪽으로 행차할 때 장양제와 태자가 따라갔다. 渭[水]를 건너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머물러 長安을 회복하길 청하였으나 태자가 듣지 않았다. 환관 李輔國이 몰래 비밀리에 門을 올리고 양제가 또 그 모책에 찬동하니, 마침내 계책을 정하여 북쪽의 靈武로 달려갔다. 당시 호위 군대가 적어 밤에 머물 때에는 장양제가 반드시 침상 앞에 있었는데, 태자가 말하기를 “밤이 되어 가히 두려워 할 만하지만 賊을 막는 것은 아녀자의 일이 아니니 마땅히 경계를 늦추시오”라고 하니, 대답하여 말하길 “바야흐로 다사한데 만약 급박한 일이 생기면 칩이 스스로 상대할 것이니 殿下께서는 천천히 계책을 세우십시오”라고 하였다.<sup>8)</sup> [장양제가] 영무에서 머물 때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일어나 戰士의 옷을 꿰매어 태자가 억

品. 承徽十員, 正五品. 昭訓十六員, 正七品. 奉儀二十四員, 正九品”(中華書局, 38쪽).

- 6) 『冊府元龜』 권57, 帝王部57, 明察, 현종 개원 25년(737) 조, “以太子瑛得罪, 召左相 李林甫議立副君. 時武惠妃承寵, 林甫希旨, 因以惠妃子壽王瑁對. 玄宗不可, 竟册立肅宗. 林甫繇是恐不利己, 乃起妃族韋堅·柳勣之獄, 數危於肅宗”(鳳凰出版社, 605쪽). 관련 내용은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193~195쪽 참조.
- 7) 『資治通鑑』 권215, 현종 천보 5재(746) 7월 조, “將作少匠韋蘭·兵部員外郎韋芝爲其兄堅訟冤, 且引太子爲言. 上益怒. 太子懼, 表請與妃離婚, 乞不以親廢法”(中華書局, 6873쪽).
- 8) 『구당서』 권52, 숙종장황후전, “太子如靈武, 時賊已陷京師, 從官單寡, 道路多虞. 每太子次舍宿止, 良娣必居其前. 太子曰, ‘捍禦非婦人之事, 何以居前?’ 良娣曰 ‘今大家跋履險難, 兵衛非多, 恐有倉卒, 妾自當之, 大家可由後而出, 庶幾無患’(2185쪽).

지로[勅] 저지하자, 대답하여 말하길 “지금 어찌 제가 스스로를 기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乾元 연간(758~760) 초에 淑妃<sup>9)</sup>로 冊拜하고 그 부친을 尙書左僕射로 추증하였으며,<sup>10)</sup> 자매는 모두 封號를 받았고 동생 張淸·張潛은 大寧<sup>11)</sup>과 延和 두 郡主에게 장가들었다. 마침내 황후로 세워졌고<sup>12)</sup> 내외명부에게 조서를 내려 모두 光順門으로 모이게 하였다.

황후는 능히 총애를 받았고 점차 政事에 관여하여 이보국과 서로 도왔는데, 개인적 관계로 권력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苑中에서 親蠶할 때 많은 命婦들이 서로 예를 갖추니 儀物이 성대하였다. [건원] 2년(759) 군신들이 황제에게 존호를 올리니 황후 또한 군신들을 사주하여 자기를 높여 ‘翊聖’이라 칭하게 하였다. 황제가 李揆에게 물으니 이규가 다투어 불가하다고 하였다. 마침 월식이 있자 황제가 허물이 後宮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만두었다.<sup>13)</sup> 또 이보국과 모의하여 上皇帝(즉 현종)를 西內(즉 太極宮)로 옮겼다.<sup>14)</sup> 端午에 황제가 山人 李唐을 불러 만나니

9) 『구당서』 권51, 后妃傳上, “唐因隋制, 皇后之下, 有貴妃·淑妃·德妃·賢妃各一人, 爲夫人, 正一品. 昭儀·昭容·昭媛·修儀·修容·修媛·充儀·充容·充媛各一人, 爲九嬪, 正二品. 婕妤九人, 正三品. 美人九人, 正四品. 才人九人, 正五品. 寶林二十七人, 正六品. 御女二十七人, 正七品. 采女二十七人, 正八品. 其餘六尙諸司, 分典乘輿服御”(2161쪽). 당대 후궁제도에 대해서는 김호, 『唐代 皇室女性の生活과 地位』, 『동양사학연구』 97, 6~12쪽 참조.

10) 『책부원구』 권141, 帝王部141, 尊外戚, “肅宗張皇后父去逸, 爲太僕卿, 肅宗即位, 贈左僕射, 母竇氏封義帝縣主”(1584쪽).

11) 『신당서』 권83, 郊國公主傳, “始封大寧. 下嫁張淸. 薨貞元時”(3661쪽).

12) 任士英, 『唐代玄宗肅宗之際的中樞政局』,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250쪽 등 참조.

13) 『자치통감』 권221, 숙종 건원 2년(759) 2월 조, “先是百官請加皇后尊號曰‘輔聖’, [考異曰; ‘舊紀作‘翊聖’, 今從實錄] 上以問中書舍人李揆, 對曰‘自古皇后無尊號, 惟皇后有之, 豈足爲法!’ 上驚曰, ‘庸人幾誤我!’ 會月食, 事遂寢. 后與李輔國相表裏, 橫於禁中, 干豫政事, 請託無窮, 上頗不悅, 而無如之何”(7068쪽).

14) 『자치통감』 권221, 숙종 상원 원년(760) 6월 조, “李輔國素微賤, 雖暴貴用事, 上皇左右皆輕之. 輔國意恨, 且欲立奇功以固其寵, 乃言於上曰, ‘上皇居興慶宮, 日

황제가 바야흐로 어린 딸을 안고 있다가 이당을 돌아보며 말하길 “내가 딸을 염려해서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이당이 말하길 “太上皇께서는 오늘도 마땅히 폐하를 염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눈물을 흘렸으나 황후에게 제약되어 끝내 감히 西宮을 알현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위중해지자 황후가 스스로 침으로 피를 내어 불서를 베껴 정성을 보였다.

이전에 建寧王 [李]倓이 자주 황제에게 황후를 헐뜯었는데 태상황이 蜀에 있을 때 七寶鞍을 황후에게 하사하니 李泌이 戰士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줄 것을 청하였고 이답이 이필의 요청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황후가 원망하였고 끝내 모함을 받아 죽었다.<sup>15)</sup> 이로 인해 태자는 몹시 두려워하였고 황후를 섬기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황후는 여전히 태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아들 [李]佖가 일찍 죽고 [李]侗이 어렸기 때문에 태자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寶應 원년(762) 황제가 위중해지자 황후는 내관 李光輝와 함께 越王 [李]係를 황제로 세우려고 꾀하였으나 [환관] 李輔國과 程元振이 병사를 거느리고 태자를 호위하였고 황후를 別殿에 유폐하였다.<sup>16)</sup> 代宗이 즉위하자 군신들이 황제에게 아뢰어

---

與外人交通，陳玄禮·高力士謀不利於陛下。今六軍將士盡靈武勳臣，皆反仄不安，臣曉諭不能解，不敢不以聞 [胡三省注：李輔國此言，是臨肅宗以兵也] …… 輔國又令六軍將士，號哭叩頭，請迎上皇居西內。 [호삼성 주：唐以大明宮爲東內，太極宮爲西內，興慶宮爲南內]”(7093~7094쪽).

15) 『자치통감』 권219, 숙종 지덕 원재(756) 12월 조, “時張良娣與李輔國相表裏，皆惡泌。建寧王倓謂泌曰，‘先生舉倓於上，得展臣子之效，無以報德，請爲先生除害’”(7009쪽).

16) 『책부원구』 권11, 帝王部11, 繼統3, 代宗 조, “肅宗寢疾，時皇后張氏有寵，無子。慮宮車晏駕，失權勢，結少子越王係密構異謀，將圖廢立。乙丑，皇后矯詔召太子，會宦官程元振知之，潛發於李輔國。輔國久掌禁兵，素與皇后嫌隙，又聞元振言，有自得色，乃與元振定策，伏兵於凌霄門，擁太子，請不赴召。以兵翼太子，入飛龍殿，倓變而動。既夜，輔國·元振乃勒兵會于三殿，收捕越王係及同謀中宮朱光輝·馬英俊等百餘人，禁錮之，逼皇后，幽於別殿”(108쪽). 관련 내용은 임사영,

[장황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기를 청하자 죽었다. [張]淸·[張]潛과 [황후의] 외삼촌 竇履信은 모두 流放<sup>17)</sup>되었고 支黨은 주살되었다.

### 肅宗章敬吳皇后

숙종의 章敬皇后 吳氏는 濮州 濮陽[縣] 사람이다. 부친 [吳]令珪는 鄆[縣]丞일 때 사건에 연루되어 죽었기 때문에 황후는 어려서 掖廷에 들어갔다.

숙종이 동궁에 있었을 때 재상 이임보의 음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태자가 속으로 근심하여 머리카락[鬢髮]이 듬성듬성 빠졌다[班禿]. 후일 [현종을] 알현하니 현종이 보고 기쁘지 않아 동궁으로 행차하였는데, 돌아보니 廷宇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악기에는 먼지가 앉고 벌레가 좀먹었으며 좌우에는 妃侍가 없었다. 황제가 안색을 바꾸어 高力士에게 말하길 “아들의 거처가 이 모양인데 將軍은 나에게 왜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 京兆의 良家子 5인을 뽑아 태자를 잘 모시게 하였다. 고력사가 말하길 “경조에서 가려 뽑으면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을 수 있으니 掖廷의 衣冠子を 취하는 것만 못합니다. 괜찮은지요?”라고 하여, 조서를 내려 可하다고 하였다. 3인을 뽑았는데 그녀가 그 안에 있었고 은총을 입었다.<sup>18)</sup> [그녀가] 돌연히 자다가 가위에 눌려 깨어나지 못

『황제들의 당제국사』, 222~226쪽 참조.

17) 『구당서』 권50, 刑法志, “有笞·杖·徒·流·死, 爲五刑. …… 流刑三條, 自流二千里, 遞加五百里, 至三千里”(2136~2137쪽).

18) 『자치통감』 권213, 현종 개원 14년(726) 10월 조의 考異, “…… 『次柳氏舊聞』, ‘肅宗在東宮爲李林甫所構, 勢幾危者數矣, 無何, 須鬢斑白. 嘗早朝, 上見之, 愀然曰, ‘汝歸第, 吾當幸汝.’ 及上至, 顧見宮庭殿宇皆不洒掃, 而樂器塵埃, 左右使令無有妓女, 上爲之動色, 使力士詔掖庭按籍閱視得三人, 乃以賜太子, 而章敬吳皇后在選中, 生代宗.’ 按開元二十三年, 李林甫初爲相, 二十五年廢太子瑛, 二十六年乃立肅宗爲太子, 天寶五年李林甫始構韋堅之獄. 舊聞所記, 事皆虛誕, 年月不合. 新書后妃傳全取之, 今皆不取”(6773~6774쪽).

하였는데, 태자가 물어보니 대답하길 “꿈에 神이 내려와 갑옷을 입고 검을 든 채 나의 옆구리를 갈라 들어왔는데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훗날로 보니 그 흔적이 아직 희미하게 있었다. 代宗을 낳으니,<sup>19)</sup> 嫡皇孫이었다. 태어난 지 사흘째에 황제가 와서 황손을 씻어주려고 하였다. 손자가 몸이 연약하였으므로 유모가 볼품없음을 꺼려하여 다른 궁의 아이를 데려와 바치자 황제가 보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유모가 머리를 조아리며 진실을 말하였다. 황제가 “네가 알 바가 아니니 속히 아이를 데려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적손을 보고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는데 해를 보며 말하길 “福이 그 아버지를 넘겠구나”라고 하였다.<sup>20)</sup> 황제가 돌아가면서 내궁의 음악·연희 도구를 모두 남겨두고, 고령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가히 태자와 마시면 하루에 세 천자를 보는 것이니, 기쁘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녀는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러워 태자(즉 숙종)가 예우하는 것이 매우 극진하였지만, 18세에 흥거하였다. 대종이 즉위하니 군신들이 황후를 숙종의 모에 합사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황후로 추존하고 시호를 올려 建陵<sup>21)</sup>에 합장하였다. 옛 무덤을 여니 [황후의] 외모가 운택한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옷은 모두 적토색[赭色]이어서 보는 사람들이 신이 하다고 말하며 聖子の 부서가 있다고 운운하였다.

### 代宗貞懿獨孤皇后

代宗의 貞懿皇后 獨孤氏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부친 [獨孤]穎

19) 『책부원구』 권2, 帝王部2, 誕聖, “代宗以開元十四年十月十三日生於東都上陽宮之別殿, 時玄宗幸汝州之溫陽, 有望氣者云宮中有天子氣, 玄宗即日還宮, 是夜帝降誕”(19쪽).

20) 임사영, 『황제들의 당제국사』, 213~215쪽 참조.

21) 劉向陽, 『唐代帝王陵墓』, 三秦出版社, 2003, 207~222쪽 참조.

은 左威衛錄事參軍이었다.

[현종] 天寶 연간(742~756) 황제가 廣平王이었을 때 당시 貴妃 楊氏의 외가가 외척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秘書少監 崔岫의 처 韓國夫人이 그 딸을 皇孫에게 시집보내 妃로 삼았다. [崔]妃는 아들 [李]愬를 낳았는데 바로 僖宗이었다. 최비는 외가를 믿고 매우 교만하고 시샘이 많았는데, 양씨들이 주살되자 [최비에 대한] 예우가 점점 박해졌다. [최비가] 흥거하자 그녀(즉 정의황후 독고씨)가 미색으로 나아가 항상 [광평왕의] 밤을 독차지하였다. 광평왕이 즉위하자 貴妃로 책립되었으며 韓王 [李]迥와 華陽公主를 낳았다.<sup>22)</sup>

[대종] 大曆 10년(775)에 흥거하자 황후로 追號하고 시호를 올렸다. 황제가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內殿에 빈소를 두고 여러 해 동안 바깥에 장사지내지 않았다. 3년 후 비로소 조서를 내려 황도[都] 바깥쪽에 능을 만들게 하고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려고 하였다. 補闕 姚南仲이 간언하여 그만두니 이에 莊陵에 장사지냈다. 재상 常袞에게 조서를 내려 哀冊을 짓게 하였고 황제는 황후에 대한 마음이 두터웠으므로 장례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여 그 심정이 드러나도록 힘썼다. [이에] 상공은 [애책에서] 처연하고 곡진한 슬픔을 극진히 기술하여 황제의 마음에 맞게 하였다. 또한 군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挽辭(즉 추도문)를 짓게 하였는데, 황제가 그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을 골라 부르게 하였다.

예전에 황후에 대한 황제의 사랑과 예우가 제일이어서 그녀의 宗叔 [獨孤]卓을 少府監, 兄 [獨孤]良佐를 太子中允에 임명하였다[官].<sup>23)</sup>

22) 『자치통감』 권226, 德宗 建中 원년(780) 정월 조의 考異, “建中實錄曰 ‘初, 大曆中, 上居東宮, 貞懿皇后方爲妃, 有寵, 生韓王回. 帝又鍾愛, 故闈官劉清潭·京兆尹黎幹與左右嬖幸欲立貞懿爲皇后, 且言韓王所居獲黃蛇, 以爲符, 動搖諸宮, 而晏附其謀, 冀立殊效, 圖爲宰輔. 時幸臣元載獨保護上, 以爲最長而賢, 且嘗有功, 義不當移. 王縉亦謂人曰, 『晏, 黠者也. 今所圖無乃過黠乎!』 後其議漸定. 貞懿卒不立. 上憾之. …” (7276쪽).

## 代宗睿眞沈皇后

대종의 睿眞皇后 沈氏는 吳與 사람이다. [현종] 개원 연간(713~741) 말에 良家子로 동궁에 들어갔으나, 태자(즉 肅宗)가 광평왕에게 하사하였고 마침내 德宗을 낳았다.

天寶의 亂(즉 안사의 난) 때 賊이 그녀를 東都 掖廷에 가두었다. 광평왕(즉 대종)이 낙양에 들어갔을 때 다시 宮中에 남겨두었다. 당시 바야흐로 북벌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미처 장안으로 돌려보내지 못하였던 것인데, 河南이 史思明에게 함몰되자 마침내 그녀의 소재를 잃어버렸다. 대종이 즉위하여 덕종을 황태자로 삼고 조서를 내려 그녀의 생사를 찾게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덕종이 즉위하자 먼저 조서를 내려 그녀의 증조부 [沈]士衡을 太保, 조부 [沈]介福을 太傅, 부친 [沈]易直을 太師, [심역직의] 동생(즉 숙부) [沈]易良을 司空, 심역직의 아들 [沈]震을 太尉로 추증하였다. 하루에 127 인을 封拜하였는데 詔制는 모두 錦翠로 장식하고[池飾] 廐馬에 실어 그 집에 내려 주었다. 심역량의 처 최씨가 입궁하여 알현하니 황제가 옷을 갈아입고 王·韋美人에게 나가 인사하게 하고[出拜] 최씨에게 조서를 내려 답례하지 않도록하였다.

[덕종] 建中 원년(780) 이에 책서를 갖춘 앞에서 皇太后的 존호를 올리니, 황제가 睿元殿<sup>24)</sup>에서 의례를 베풀어[供張] 袞冕을 갖추고 왼쪽[左序]에서 나와 동방에 섰고 군신들은 자기 자리에 위치하였다. 황제가 再拜하고 책서를 받들며 슬피 흐느껴 우니 좌우가 모두 울었다. 이에 中書 舍人 高參이 議를 올려 말하길 “漢文帝는 즉위한 뒤 薄昭를 보내 代 지역

23) 『책부원구』 권301, 外戚部2, 封拜, “獨孤卓者, 貞懿皇后之叔也. 大曆初, 后寵遇無雙, 以恩澤官其宗屬. 卓自太嘗少卿爲少府監. 及后兄良佐爲太子中允”(3405쪽).

24) 『자치통감』 권211, 玄宗 開元 4년(716) 5월 조의 호삼성 주, “大明宮正殿曰睿元殿, 其北曰宣政殿”(6717쪽).



에 있던 太后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마땅히 한의 고사에 따라 有司에게 날짜를 택하여 심씨 일가를 나누어 보내 주현에 가서 물색하며 찾게 함으로써 황제의 효성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을 알리고 하늘이 복을 내리시어 신령한 뜻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십시오. 모름지기 황태후께서 계신 곳을 살펴 아신 연후 대신을 보내 法駕를 갖추어 봉영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에 睦王<sup>25)</sup> [李]述을 奉迎使로 삼고 工部尙書 喬琳을 副[使]로 삼았으며 昇平公主에게 起居을 시중들게 하니, 사자가 천하에 나누어 갔다.

故 中官 고력사의 딸은 자못 禁中의 일에 관해 곧잘 말하였는데, 女官 李眞一과 함께 일찍이 황태후를 따라 遊[幸]한 적이 있었다. 이진일은 고씨를 보고 [황태후인지] 의심하며 물었는데, 모호하고 확실하지는 않았으나 나이와 생김새가 거의 황태후와 닮았다. 또한 황태후가 예전에 육포[脯]를 잘라 황제에게 먹여주다가 왼쪽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고씨 또한 일찍이 과일을 자르다가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다. 이때 궁중에 황후를 아는 사람이 없어 이에 [고씨를] 上陽宮<sup>26)</sup>으로 맞이하여 급히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기뻐하였고 군신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고력사의 아들이 이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 사정을 갖추어 말하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용서하였다. 황제가 좌우에게 말하길 “나는 차라리 100번의 속임을 당하더라도 한 번의 진실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스스로 태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자주 있었으나 증거를 찾으면 모두 답변이 궁색하였으므로 결국 황제는 평생 찾을 수 없었다.<sup>27)</sup> 貞元 7년(791) 조서

25) 『구당서』 권116, 睦王述傳, “代宗第四子。大曆九年冬, 田承嗣謀亂河朔, 時鄭王居長, 典兵師, 不幸薨落, 諸王皆幼, 多未封建。大臣奏議請封親王, 分領戎師, 以威天下”(3391쪽).

26) 『당육전』 권7, 尙書工部, 工部郎中 조, “東都城左成臯, 右函谷, 前伊闕, 後邙山, …… 上陽宮, 在皇城之西南”(219~221쪽).

27) 『자치통감』 권226, 덕종 건중 2년(781) 정월 조, “初, 高力士有養女嫠居東京, 頗

를 내려 외고조부 [沈]琳을司徒로 추증하고 徐國公에 봉하였으며 [외가를] 위하여 5廟를 세우고 심림을 始祖로 삼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심씨] 집안의 자제[族子]인 [沈]房을 金吾將軍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sup>28)</sup>

憲宗이 즉위하자 有司가 建言하기를 “황태후 심씨가 사라진 지 27년이 되었음에도 大行皇帝께서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슬퍼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망극하시었습니다. 이에 建中 연간(780~783) 明詔를 내려 사자를 보내 봉영하도록 하였으나, 배와 수레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갔음에도 세월이 흘러 찾을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청컨대 大行皇帝의 啓殯에 따라 군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황태후를 위하여 肅章門 內殿에서 애도하게 하고 환관에게 [태후의] 혼의[廡衣]를 받들어 幄坐에 두게 하며 宮中에서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게 하고 天地 宗廟에 고하여 태황태후의 謚冊을 올리고 神主를 만들어 代宗廟에 합사하며 法駕를 갖추어 禱衣를 받들어 元陵 祠室에 넣어 두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可’하다고 하였다.

### 德宗昭德王皇后

덕종의 昭德皇后 王氏는 본래 벼슬한 집안이지만 譜系가 없어졌다.

---

能言宮中事，女官李眞一意其爲沈太后，詣使者具言其狀。[호삼성 주; 去年遣使訪求太后] 上聞之，驚喜。時沈氏故老已盡，無識太后者。上遣宦官·宮人往驗視之，年狀頗同，宦官·宮人不審識太后，皆言是。高氏辭稱實非太后，驗視者益疑之，強迎入上陽宮”(7296쪽).

28) 『구당서』 권52, 代宗睿眞沈皇后傳, “德宗敦崇外族, 贈太后父易直太師, 易直父庫部員外郎介福贈太傅, 介福父德州刺史士衡贈太保, 易直第二子祕書少監震贈太尉。時沈氏封贈拜爵者百餘人。貞元七年, 詔外曾祖隋陝令沈琳贈司徒, 追封徐國公, 與外祖贈太師易直等立五廟, 以琳爲始, 緣祠廟所須, 官給。后無近屬, 惟族子房爲近, 德宗用爲金吾將軍, 主沈氏之祀”(2188쪽).

황제가 魯王이었을 때 [왕씨를] 받아들여 嬪으로 삼았는데 順宗을 낳아 많은 총애를 받았다. [덕종이] 즉위하고 나서 淑妃로 책립되었으며 그 부친 [王]遇는 揚州大都督으로 추증되고 자손과 인척들이 모두 관직을 받았다.

[덕종] 貞元 3년(787) 왕숙비가 오랫동안 병을 앓자 황제가 염려하여 마침내 황후로 책립하였다. 책례가 마치자마자 황후가 붕어하였는데 군신들이 3일 동안 크게 곡하였고 황제는 7일이 지나 상복을 벗었다.<sup>29)</sup> 장례를 치르려 하자 황후의 모친 郾國鄭夫人이 제물을 진설하길 청하자[設奠] 조서를 내려 제물은 빌려 쓰지 못하게 하고 제사하는 것만 허락하였다. 이에 宗室王 및 大臣 李晟·渾瑊 등이 모두 제사하였고 發塗日부터 날마다 제사[奠]지내다 發引을 마치고서야 그만두었다. 靖陵에 장사지내고 旒·丞을 설치하여 다른 陵臺와 같게 하였다. 사당을 세우고 坤元之舞<sup>30)</sup>를 연주하였다. 칙서를 내려 宰相 張延賞·柳渾 등에게 악곡을 만들게 하였는데 황제가 글이 정교하지 않다고 싫어하였다. 李紆가 謚冊을 올려 ‘大行皇后’로 하였는데, 황제가 또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아울러 翰林學士 吳通玄에게 조서를 내려 改撰하게 하니 시책에서 ‘咨后王氏’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길 岑文本이 올렸던 文德皇后的 시책에 ‘皇后長孫氏’라 하였던 것이 예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順宗] 永貞 원년(805) 개장하여 崇陵에 합장[祔]하였다.

29) 박한제는 덕종의 소덕황후 왕씨를 “죽는 날에서야 겨우 황후로 세웠다는 것은 황태자의 어머니를 황후로 두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황후 공위는 황제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가 개제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박한제, 『대당제국과 그 유산』, 세창출판사, 2015, 335쪽).

30) 『구당서』 권31, 음악지, 1142쪽 참조.

### 德宗韋賢妃

덕종의 賢妃 韋氏는 외척의 舊族이다. 조부 [韋]濯은 定安公主(즉 중종의 딸)에게 장가들었다.<sup>31)</sup> 처음에 良娣가 되었고 덕종 정원 4년(788) 賢妃로 冊拜되었다. 궁중[宮壺]의 일은 [그녀의 말에]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성품이 기민하고 정숙하고 언동에 모두 법도가 있었으므로 황제의 총애가 거듭되어 후궁들이 그 행동을 본받지 않음이 없었다. 황제가 붕어하자 스스로 표를 올려 崇陵園에 남아 받들었다. [憲宗] 元和 4년(809) 흥거하였다.

### 順宗莊憲王皇后

順宗의 莊憲皇后 王氏는 琅邪 사람이다. 조부 [王]難得은 세상에 功名이 있었다. 代宗 때 그녀는 良家에서 뽑혀 입궁하였고 才인이 되었다. 순종이 藩[邸]에 있었을 때 황제(즉 대종)는 왕재인이 어렸기 때문에 순종에게 하사하였는데, 王孺人이 되었고 憲宗을 낳았다. [宣]王(즉 순종)이 동궁에 있었을 때 良娣로 책립되었다. 왕양제의 성품이 인자하고 유순하여 궁중 사람들이 그 德을 흠모하였으니 화목[柔雍]하지 않음이 없었다. 순종이 즉위하였을 때 질병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녀는 醫藥을 시봉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에] 황후로 책립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황제의] 병세가 위중하여 그만두었다.<sup>32)</sup> 憲宗이 內禪하자<sup>33)</sup> 太上

31) 『책부원구』 권469, 臺省部13, 封駁, 夏侯銛 주, “爲給事中. 開元二十一年二月, 安定公主初降王同皎, 後降韋濯. 又降崔銑. 銑卒, 及是, 公主薨. 其子駙馬王繇請與其父合葬. ……”(5299쪽).

32) 張曉菁, 「試論唐代中後期“不立皇后”對宦官專權的影響」,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15, 39쪽.

33) 현종은 順宗 永貞 원년(805) 8월 정유일에 “受內禪”하고, 을사일에 황제에 즉위하였다. 즉 정병준, 『《舊唐書》順宗本紀·憲宗本紀上 譯註』, 『신라사학보』 42, 2018, 413쪽 참조.

皇后로 높여졌다. [현중] 元和 원년(806) 마침내 존호를 올려 皇太后라 하였다.<sup>34)</sup>

황태후는 삼가고 조심하며 外家를 깊이 억누르면서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고 內職을 훈계함에 옛날 후비의 기풍이 있었다. [원화] 11년(816) 붕어하니 나이 54세였다. 遺令을 내려 말하길 “황태후가 관리들에게 삼가 알리노라[敬問具位]. 만물의 이치는 반드시 지극한 도리[有極]로 귀결된다고 한다. 未亡人(즉 황태후가 자신을 지칭)은 오랜 세월 병을 앓아 나날이 쇠약해졌음에도 다행히 천수를 누렸고 陵寢에도 모셔지게 되었다. 마음으로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으니, 어찌 슬퍼할 일이겠는가. 易月(즉 달을 날로 환산하여 복상 기간을 단축하는 상제)의 제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황제는 마땅히 사흘 후부터 정사를 돌보도록 하고 복상한 지 27일 뒤에 상복을 벗도록 하라.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은 3일 동안 조문한[臨] 뒤에는 그치게 하라. 宮中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조문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곡하지 못하게 하라. [민간의] 혼인[昏嫁], 제사[祠祀],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말라. 상복을 벗고 난 뒤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 侍醫에게 죄를 주지 말라. 배장과 합사[陪祔]는 舊制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有司가 시호를 올리고 豐陵에 장사지냈다.

### 憲宗懿安郭皇后

憲宗의 懿安皇后 郭氏는 汾陽王 [郭]子儀의 손녀이다. 부친 [郭]曖가 昇平公主<sup>35)</sup>에게 장가들어 마침내 황후를 낳았다. 현종이 廣陵王이었을 때 장가들어 [王]妃로 삼았다. 順宗은 그녀의 가문에 큰 공훈이 있고 모

34) 정병준, 『新唐書』 順宗·憲宗本紀 역주, 『신라사학보』 41, 2017, 340쪽 참조.

35) 『구당서』 권120, 郭曖傳, “子儀第六子. 年十餘歲, 尙代宗第四女昇平公主, 時昇平年亦與曖相類”(3449쪽).

친(즉 승평공주)도 원래부터 존귀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다른 며느리들과 다르게 예우하였는데, 이에 [황후가] 穆宗을 낳았다. [헌종] 원화 원년(806) 貴妃로 進册되었다. 원화 8년(813) 군신들이 세 차례나 황후로 책립하길 주청하였으나 황제는 이 해는 子午忌<sup>36)</sup>이고 또한 이때 후궁에 총애하는 궁녀가 많은데 괘귀비가 존귀한 지위를 얻으면 [그녀에게] 속박되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章報를 들어주지 않았다.<sup>37)</sup>

穆宗이 제위를 계승하자 皇太后的 존호를 올렸고, [부친] 靑衣 太尉, 모친을 齊國大長公主로 추증하고 형 [郭] 釗를 刑部尙書, [郭] 縱을 金吾大將軍으로 발탁하였다. 태후가 興慶宮으로 移御하자 무릇 [매달] 초하루와 보름 및 정월 초하루[三朝]<sup>38)</sup>에 황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궁문에 이르러 축수하였다. 혹 歲時에 하례하며 문안을 여쭙고 연회를 올렸는데 후궁·외척·내외명부의 수레와 말들이 [길에] 가득하고 패옥[環佩]의 소리가 흥경궁에 가득하였다. 황제 역시 사치스러워 아침저녁으로 [태후에게] 供御할 때 사치스럽게 하여 태후의 마음에 들게 하였다. 태후는 일찍이 驪山으로 행차하여 산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며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조서를 내려 景王에게 금군[禁甲]을 이끌고 따르게 하였고 황제가 친히 昭應에 이르러 奉迎하여 장막에 머물며 며칠 동안 연음을 베푼 뒤 돌

36) 『唐會要』 권83, 嫁娶, 건중 원년(780) 11월 조, “勅, ‘…… 今時俗以子卯午酉年謂之當梁, 其年娶婦, 舅姑不相見, 蓋禮無所據, 亦請禁斷’”(上海古籍出版社, 1812쪽).

37) 『자치통감』 권239, 헌종 원화 8년(813) 10월 조, “羣臣累表請立德妃郭氏爲皇后, 上以妃門宗強盛, [호삼성 주; 妃, 郭曖之女, 子儀之孫女也] 恐正位之後, 後宮莫得進, 託以歲時禁忌, 竟不許”(7698쪽). 관련 내용은 임사영, 『황제들의 당제국사』, 302~303쪽; 박한제, 『대당제국과 그 유산』, 333~334쪽 참조.

38) 『구당서』 권52, 憲宗懿女郭皇后傳, “太后居興慶宮, 帝每月朔望參拜, 三朝慶賀, 帝自率百官詣門上壽. 或遇良辰美景, 六宮命婦, 戚里親屬, 車騎駢喧於南內, 鑾珮之音, 鏘如九奏”(2196쪽).

아왔다. 황제가 붕어하자 환관이 태후에게 稱制하도록 모의하였는데, 태후가 화를 내며 말하길 “내가 武氏를 본받으라는 것인가? 지금 태자(즉 敬宗)<sup>39)</sup>가 비록 어리지만 큰 덕망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보필하게 하면 될 일인데 내 어찌 정사(外事)에 간여하겠는가?”<sup>40)</sup>라고 하였다.

敬宗이 즉위하자 太皇太后로 불렸다. [경종] 寶曆 연간(825~826)에 [황제가] 갑자기 죽으니 태후가 江王을 불러 황제의 자리를 잇게 하니 바로 文宗이다. 문종은 성품이 삼가고 효성스러워 태후를 섬김에 예를 다하였고 무릇 과일과 진귀한 보물 및 사망에서 바친 진기한 것들을 반드시 먼저 宗廟와 三宮<sup>41)</sup>에 바친 후 사용하였다.

武宗은 사냥과 角武拊를 좋아하여 五坊의 小兒를 뽑아 禁中에 출입시켰다.<sup>42)</sup> 어느 날 태후의 안부를 물으며 조용히 청하여 말하길 “어떻게 하면 훌륭한 천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태후가 말하길 “간언하는 신하들의 상주(章疏)를 마땅히 자세히 살펴 쓸 만한 것을 헤아려 행용하

39) 『신당서』 권8, 敬宗本紀, “敬宗睿武昭愍孝皇帝諱湛, 穆宗長子也. 母曰恭僖皇太后王氏. 始封鄂王, 徙封景王. 長慶二年十二月, 穆宗因擊毬暴得疾, 不見羣臣者三日, 左僕射裴度三上疏, 請立皇太子, 而翰林學士·兩省官相次皆以爲言. 居數日, 穆宗疾少間, 宰相李逢吉請立景王爲皇太子. 四年正月, 穆宗崩. 癸酉, 門下侍郎·平章事李逢吉攝冢宰. 丙子, 皇太子即皇帝位于太極殿”(227쪽).

40) 『자치통감』 권243, 목종 장경 4년(824) 정월 조, “庚午, 上疾復作. 壬申, 大漸, 命太子監國. 宦官欲請郭太后臨朝稱制, 太后曰‘昔武后稱制, 幾危社稷. 事見武后紀. 幾, 居依翻. 我家世守忠義, 非武氏之比也. 太子雖少, 但得賢宰相輔之, 卿輩勿預朝政, 何患國家不安! 自古豈有女子爲天下主而能致唐·虞之理乎!’取制書手裂之. 太后兄太常卿釗聞有是議, 密上牋曰‘苟果徇其請, 臣請先帥諸子納官爵歸田里’太后泣曰, ‘祖考之慶, 鍾於吾兄’”(7830~7831쪽).

41) 문종 시기의 세 태후를 가리킨다. 즉 목종의 모후인 太皇太后 郭氏, 경종의 모후인 寶曆太后(義安太后) 王氏, 그리고 문종의 모후인 積慶太后 蕭氏를 말한다.

42) 『자치통감』 권236, 순종 영정 원년(805) 2월 조의 호삼성 주, “五坊, 一曰鷓坊, 二曰鷓坊, 三曰鷓坊, 四曰鷹坊, 五曰狗坊. 小兒者, 給役五坊者也. 唐時給役者多呼爲小兒, 如苑監小兒·飛龍小兒·五坊小兒是也. 五坊屬宣徽院”(7610쪽).

고 불가한 것은 재상에게 자문한다. 직언을 막지 않고 편향된 말을 받아 들이지 않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腹心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再拜하고 돌아가 간언하는 상주[諫章]를 찾아 읽어보니 왕왕 遊獵의 일을 말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사냥 나가는 것이 드물어졌고 小兒·武拊 등에게 다시는 멋대로 사여하지 않았다.

宣宗이 즉위하니, 태후에게는 서자[諸子]<sup>43)</sup>였고 모친인 鄭氏는 [태후의] 옛 시녀여서 [태후와] 오랜 원한이 있었다. 황제가 봉양하는 예의가 점차 야박해지자, 태후가 우울하여 즐겁지 않아 한두 명과 함께 勤政樓에 올랐을 때 장차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좌우에서 함께 황후를 붙들었다.<sup>44)</sup> 황제가 이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고 이날 밤 태후가 갑자기 붕어하였다. 有司가 시호[尊諡]를 올리고 景陵外園에 장사지냈다.<sup>45)</sup> 太常官 王曠가 태후를 경릉에 합장하고 신주를 헌종의 묘실에 합사할[附] 것을 주청하였지만, 황제가 달갑지 않아 宰相 白敏中으로 하여금 질책하게 하였다. 왕호가 말하길 “태후는 헌종이 동궁이던 시절의 元妃이고 며느리로서 순종을 섬겼으며 5朝(즉 헌종, 목종, 경종, 문종, 무종)에 걸쳐 천하의 어머니로 있었으니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백민중 역시 화를 냈다. 周墀가 다시 질책하여 말했으나 왕호가 끝내 굽히지 않자,

43) 『구당서』 권52, 헌종의안곽황후전, “文宗孝而謙謹, 奉祖母有禮, 膳羞珍果, 蠻夷奇貢, 獻郊廟之後, 及三宮而後進御. 武宗即位, 以後祖母之尊, 門地素貴, 奉之益隆, 既而宣宗繼統, 即后之諸子也, 恩禮愈異於前朝. 大中年崩於興慶宮, 諡曰懿安皇太后, 祔葬於景陵”(2197~2198쪽).

44) 『자치통감』 권248, 宣宗 大中 2년(848) 6월 조, “初, 憲宗之崩, 上疑郭太后預其謀. 又, 鄭太后本郭太后侍兒, 有宿怨, 故上即位, 待郭太后禮殊薄. 郭太后意怏怏, 一日, 登勤政樓, [호삼성 주; 即玄宗所起勤政務本之樓, 在興慶宮] 欲自隕. 上聞之, 大怒, 是夕, 崩, 外人頗有異論”(8031쪽).

45) 임사영, 『황제들의 당제국사』, 351~352쪽.



주지가 말하길 “왕호는 진실로 고고하고 강직하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왕호를 句容[縣]수으로 좌천하였다. 懿宗 咸通 연간(860~873) 왕호가 돌아와 禮官이 되자 이전의 간언을 다시 올렸다. 이에 조서를 내려 태후의 신주를 헌종묘에 합사하였다.

### 憲宗孝明鄭皇后

헌종의 孝明皇后 鄭氏는 丹楊 사람인데 혹은 본래 爾朱氏였다고도 한다. [헌종] 원화 연간(806~820) 초 李鎬가 반하였을 때 어떤 관상가[相者]가 “황후는 마땅히 천자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기가 이를 듣고 侍人으로 들었다. 이기가 주살되자 掖廷에 沒入되어 懿安[皇]后를 시봉하였다. 헌종이 그녀를 들여 宣宗을 낳았다. 선종이 光王이 되자 그녀는 王太妃가 되었다. [선종이] 즉위하자 皇太后로 높여졌다. 태후는 다른 거처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황제가 大明宮에서 봉양하며 아침저녁으로 몸소 문안하였다. 懿宗이 즉위하자 태후를 太皇太后로 높였다. [의종] 함통 3년(862) 황제가 태후를 모시고 三殿에서 연회를 베풀며 翰林學士에게 結綺樓 아래에 시립하게 하였다. [함통] 6년(865) 봉어하자 관[杖]을 西內로 옮겨 諡冊을 올리고 景陵旁園에 장사지냈다.

### 穆宗恭僖王皇后

穆宗의 恭僖皇后 王氏는 越州 사람으로 원래 仕家의 자녀였다. 어렸을 때 황제를 동궁에서 모셔 敬宗을 낳았다. [목종] 長慶 연간(821~824) 妃로 책립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존호를 올려 皇太后라 하였고 태후의 부친 [王]紹卿을 司空으로 추증하고 모친 張[氏]를 趙國夫人으로 追封하였다. 文宗 시기에 寶曆太后라 불렸다. [문종] 大和 5년(831) 재상들이 건의하여 아뢰길 “太皇太后와 寶曆太后的 칭호가 분별되지 않는데, 전대의 詔書에서는 감히 가리켜 말하지 않고 모두 宮으로 칭호를 삼았으니 지금

보력태후가 義安殿에 거처하므로 마땅히 義安太后라 하십시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武宗] 會昌 5년(845) 봉어하자 有司가 시호를 올리고 光陵 東園에 안장하였다.<sup>46)</sup>

### 穆宗貞獻皇后蕭皇后

목종의 貞獻皇后 蕭氏는 閩 사람이다. 목종이 建安王이었을 때 그녀가 모셔 文宗을 낳았다. 문종이 즉위하자 존호를 올려 皇太后라 하였다.<sup>47)</sup>

이전에 그녀는 집을 떠나 장안으로 들어와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동생이 있었던 것만 기억하였는데, 황제가 그녀를 위해서 찾게 하였다. 곧이어 蕭洪이라는 남자가 태후 언니의 사위(姊婿)인 呂璋을 통해 알려 만나니, 태후가 진짜 동생을 찾았다고 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황제가 소흥을 金吾將軍으로 배수하여 河陽三城節度使로 나가게 하였다가 얼마 후 鄜坊으로 옮겼다. 이전에 神策[軍]에서 절도사가 나오면 군대(즉 신책군)를 들어 辨裝하고 3배의 보상을 받았다. 소흥이 대신 한 사람이 보상하지 못하고 죽자 軍中에서 모두 소흥에게 보상하도록 책

46) 『구당서』 권52, 穆宗恭僖王皇后傳, “大和八年詔, ‘伏以皇太后與寶曆太后, 每有司行遣, 稱號未分, 禮式非便, 稽諸前代, 詔令所施, 不斥言太后, 以宮名爲稱, 今寶曆太后居義安殿, 宜準故事稱義安太后’”(2199쪽); 『자치통감』 권248, 무종 회창(845) 5년 정월 조, “庚申, 義安太后王氏崩. [호삼성 주; 太和五年, 宰相建白, 以太皇太后與寶曆太后稱號未辨, 前代詔令不敢斥言, 皆以宮爲稱, 今寶曆太后居義安殿, 宜曰義安太后. 詔可]”(8013쪽).

47) 『구당서』 권52, 穆宗貞獻蕭皇后傳, “穆宗貞獻皇后蕭氏, 福建人. 初, 入十六宅爲建安王侍者, 元和四年十月, 生文宗皇帝. 寶曆三年正月, 敬宗遇弒, 中尉王守澄率兵討賊, 迎江王即位. 文宗踐祚之日, 奉冊曰 ‘嗣皇帝臣名言 ‘古先哲王之有天下也, 必以孝敬奉於上, 慈惠浹於下, 極誠意以厚人倫, 思由近以及遠, 故自家而刑國, 以臣奉嚴慈之訓, 承教撫之仁, 而長樂尚鬱其鴻名, 內朝未崇於正位, 則率土臣子, 慙慙懇懇, 延頸企踵, 曷以塞其心乎! 是用特舉彝章, 式遵舊典, 稽首再拜, 謹上穆宗睿文惠孝皇帝妃尊號曰皇太后’”(2200쪽).

임을 지웠으나 소흥이 불허하자, 左軍中尉 仇士良이 원망하였다.<sup>48)</sup> 때마침 閩 지역에서 蕭本이라는 남자가 또 태후의 동생을 칭하자 구사량이 상주[聞]하여 소흥을 鄜坊에서 불러 하옥하고 취조[按治]하였다. 소흥은 이에 代 사람이어서 조서를 내려 驩州로 유배하고 [행로의] 절반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내렸다. 소본을 贊善大夫에 발탁하고 은총을 내려 [위로] 3대를 추증하였는데, 황제는 진짜라고 여겨 열흘도 되지 않아 누차에 걸쳐 鉅萬을 사여하였다. 그러나 태후의 친동생은 병약하여 스스로 상달[達]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본이 그 가계를 속이고 구사량이 이를 보증[主]하여 마침내 [황제가]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衛尉卿·金吾將軍을 역임하였다. 때마침 福建觀察使 唐扶가 上言하여 泉州의 남자 蕭弘이 스스로가 태후의 동생이라고 말한다고 하니, 御史臺가 시비를 가리는 데 참여하였다. 昭義의 劉從諫이 또 말하여 소본과 대질하도록 청하니, 조서를 내려 三司의 高元裕·孫簡·崔郇에게 함께 심문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거짓이었다. 소본은 愛州로 유배되고 소흥은 儋州로 [유배되었으며] 태후는 끝내 동생을 찾지 못하였다.

예전에 [文宗] 太和 연간(827~835)에 懿安太后가 興慶宮, 寶曆太后가 義安殿, 태후가 大內에 거처하여 三宮太后로 불렸다. 황제가 5일마다 문안하고 歲時마다 慶謁하였는데, 대체로 複道를 경유하여 南內에 이르고 군신 및 命婦들이 宮門에 이르러 起居를 문안하였다. 有司가 四時의 新物을 바쳐 三宮으로 보낼 때도 하사[賜]라고 칭하였는데, 황제가 말하길 “三宮에 올리는 것을 어찌 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급히 붓을 찾아 ‘賜’를 지우고 ‘奉’이라 하였다. [문종] 開成 연간(836~840) 정월

48) 『구당서』 권52, 목종정현소황후전, “先是, 有自神策兩軍出爲方鎮者, 軍中多資其行裝, 至鎮三倍償之. 時有自左軍出爲鄜坊者, 資錢未償而卒于鎮, 乃徵錢於洪. 宰相李訓雅知洪詐稱國舅, 洪懼, 請訓兄仲京爲鄜坊從事以彌縫之. 洪恃與訓交, 不與所償. 又徵於卒者之子, 洪俾其子接訴於宰相, 李訓判絕之”(2200쪽).

보름밤에 황제가 咸泰殿으로 가서 연등을 크게 밝히고 樂을 연주하면서 三宮太后를 모시고 술잔을 바치며 축수하였는데, 예의가 家人과 같았으며 諸王·公主가 모두 시봉하였다.<sup>49)</sup>

武宗 때 積慶殿으로 옮겨서 또 積慶太后라 불렸다. [宣宗] 大中 원년 (847) 봉어하자 지금의 시호를 올렸다.

### 穆宗宣懿韋皇后

목종의 宣懿皇后 韋氏는 그 선대를 알 수 없다. 목종이 태자였을 때 황후가 모시게 되어 武宗을 낳았다. [목종] 長慶 연간(821~824) 妃로 책립되었다.

목종이 즉위하였을 때 비가 이미 죽었으므로 황태후로 追冊하고 尊諡를 올렸으며 또 태후의 두 여동생을 夫人으로 봉하였다. 有司가 상주하길 “태후의 능은 마땅히 별도로 능호를 제정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에 매장한 능원을 福陵이라 하였다. 그 뒤 다시 재상에게 묻기를 “光陵(즉 목종의 능)에 안장하는 것과 단지 태묘에 합사하는 것(祔廟)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하자, 상주하여 말하길 “神道는 고요한 것에서 편안하고 光陵은 산에 의지하여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2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파헤칠 수 없습니다. 福陵은 은총으로 축조되어 이미 그곳에 있으니 마침내 이곳에 매장해야 합니다. 신 등이 청하건대 신주를 받들어 穆宗廟에 합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에 조서를 내려 “짐이 誕日에 태황태후에게 예를 올리자 [태황태후께서] 짐에게 말하길 ‘천자의 효도는 제사를 받드는 것(承續)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지금 穆宗皇帝는 습후의 자리가 비었고 宣懿太后는 진실로 嗣君을 낳았으니 마땅히 목종묘에 합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49) 임사영, 『황제들의 당제국사』, 327~328쪽.

에 따라 태후의 [신주를] 받들어 穆宗의 묘실에 歿食하였다.

### 穆宗尙宮宋若昭

尙宮<sup>50)</sup> 宋若昭는 貝州 淸陽 사람인데 대대로 유학으로 알려졌다. 부친 [宋]廷芬은 辭章에 능하였고 딸 다섯을 낳았는데, 모두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屬文에 능하였다. 장녀는 [宋]若莘이고 다음은 若昭·若倫·若憲·若荀이다. 송약신·송약소의 문재가 특히 높았다. 모두 성격이 고결하고 薰澤靚妝을 경멸하여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학문으로 집안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였으며 집안에서도 寒鄉의 凡裔와 인척을 맺고 싶지 않아 그들이 학문을 하게 하였다. 송약신은 여동생을 가르칠 때 엄격한 스승과 같았다. 또 『女論語』 10篇을 지었는데, 대략 『論語』에 준하여 韋宣文君<sup>51)</sup>으로 孔子를 대신하게 하였고 曹大家 등으로 顏[淵]·冉[閔]을 대신하게 하여 婦道의 마땅함을 미루어 밝혔다. 송약소는 또 傳을 지어 해석하였다.<sup>52)</sup>

[德宗] 貞元 연간(785~804) 昭義節度使 李抱眞이 그 재능을 表로 올리자 덕종이 禁中으로 불러들여 문장을 시험하고 아울러 經史의 大誼를 물었다. 황제가 뛰어난에 감탄하여 모두 머물게 하였다. 황제는 시를 잘 지어 매번 侍臣들과 함께 창화[廣和]하였는데, 다섯 자매가 모두 참여하

50) 『당회요』 권3, 內職, “其外又有尙宮·尙儀·尙服·尙食·尙寢·尙功, 分掌宮中服御藥膳之事. 宮正糾失, 彤史紀功書過”(36~37쪽); 『구당서』 권44, 職官志3, “尙宮職, 掌導引中宮, 總司記·司言·司簿·司闈四司之官屬. 凡六尙書物出納文簿, 皆印署之. 司記掌印, 凡宮內諸司簿書出入目錄, 審而付行焉. 典記佐之, 女史掌執文書. 司言掌宣傳啓奏, 司簿掌宮人名簿廩賜, 司闈掌宮闈管籥”(1867쪽).

51) 『晉書』 권96, 列女傳, “於是就宋氏家立講堂, 置生員百二十人, 隔絳紗幔而受業, 號宋氏爲宣文君, 賜侍婢十人. 周官學復行於世, 時稱韋氏宋母焉”(2521쪽).

52) 『구당서』 권52, 穆宗尙宮宋若昭傳, “女學士尙宮宋氏 著女論語十篇, 其言模倣論語, 以韋逞母宣文君宋氏代仲尼, 以曹大家等代顏·閔, 其間問答, 悉以婦道所尙, 若昭注解, 皆有理致”(2198쪽)

여 무릇 황제에게 올린 것 가운데 일찍이 상을 받지 않음이 없었다. 또한 그녀들의 風操를 높이 평가하여 妾侍로 대하지 않았고 學士라고 불렀다. 그 부친을 饒州司馬·習藝館內教로 발탁하고 집 1區를 하사하며 穀帛을 주었다.

[憲宗] 元和(806~820) 말에 송약신이 졸하자 河內郡君으로 추증하였다. 정원 7년(791)부터 조서를 내려 秘禁의 圖籍을 송약신에게 總領하게 하였는데 穆宗은 송약소가 더 通練하다고 하여 尙宮에 배수하고 송약신의 직책을 잇게 하였다. 憲·穆·敬 3朝를 거치며 모두 先生이라 불렀고 후비와 제왕·공주들이 모두 師禮로 대하였다. [敬宗] 寶曆 연간(825~826) 초에 졸하자 梁國夫人으로 추증하고 鹵簿로 장사지냈다.

송약현이 대신 秘書를 담당하였을 때 文宗은 학문을 숭상하여 송약현이 글을 잘 짓고 論議에 뛰어났기 때문에 특히 예우하였다. [문종] 대화 연간(827~835) 李訓·鄭注가 권력을 잡았는데, 재상 李宗閔을 미워하여 駙馬都尉 沈議를 통해 송약현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권력을 장악하려 [執政] 한다고 참언하였다. 황제가 노하여 송약현을 外第에 유폐하여 賜死하고 家屬을 嶺南으로 유배보냈다[徙]. 李訓·鄭注가 패멸한 뒤 황제가 그 참언을 알고 후회하였다.

송약륜·송약순은 일찍 졸하였다. 송정분의 아들은 홀로 어리석어 가 르칠 수 없어 평생 평민으로 있었다.

### 敬宗郭貴妃

敬宗의 貴妃 郭氏는 右威衛將軍 [郭]義의 자녀인데, 괘의가 어디 사람 인지는 알 수 없다. [목종] 장경 연간(821~824)에 괘씨는 용모로 선발되어 태자궁에 들어갔다. 태자가 즉위하자 才人이 되고 晉王 [李]普를 낳았다. 황제는 [괘씨가] 일찍 아들을 낳았고 또 정숙하고 고운 것이 후궁[後廷]에서 으뜸이었으므로 특별히 총애하였다. 해를 넘겨 귀비가 되자 [부

친] 괘의를 禮部尙書에 추증하였고 형 [郭]環을 少府少監에 [임명하고] 큰 집을 사여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자 진왕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였고 귀비를 예우하는 것이 쇠하지 않았다. 그녀가 흥거한 연도는 알 수 없다.

### 武宗王賢妃

武宗의 賢妃 王氏는 邯鄲 사람인데, 그 세계[世]<sup>53)</sup>를 알지 못한다. 13세에 가무에 능하여 宮中으로 들어갔다. 목종이 [왕씨를] 潁王에게 하사하였다. 성품이 기민하고 영특하였다. [문종] 개성 연간 말 英왕이 황제위를 계승하자 그녀가 은밀히 계획을 도왔으므로 才人으로 進號되고 드디어 총애를 받았다. 왕재인은 체격이 가냘프고 키가 컸으며 자못 황제와 닮았다. [무종이] 苑中에서 사냥할 때는 재인이 반드시 따라갔는데, 두루마기를 입고 말에 올랐고 의복 장식이 화려하며 사치스러운 것이 대략 至尊과 같았다. [무종과] 서로 함께 말을 달려 출입하니, 바라보는 자들은 누가 황제인지 알지 못하였다. 황제가 황후로 책립하려고 하였으나 재상 李德裕가 말하길 “재인은 자식이 없고 게다가 가문이 본디 귀하지 않으니 천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까 우려됩니다”라고 하니 그만두었다.

황제가 점차 方士의 말에 현혹되어 약을 먹고 불로장생하고자 하였는데, 이후 점점 위중해졌다. 재인이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길 “폐하께서 날마다 단약을 조제하며 나에게 不死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부의 윤기가 점차 말라가므로 나 홀로 우려한다[爍]”라고 하였다. 곧이어 [무종의] 병이 심해지자 재인이 좌우에서 시봉하니, 황제가 [재인을] 주시하며 말하길 “나의 기력이 다하여 정신이 끊어지려 하니 생각건대 너와 이별하겠구나”라고 하였는데, 답하여 말하길 “폐하의 큰 복은 아직

53) 張萍萍, 「從唐代後·妃看唐代的政治與社會」, 天津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 23~27쪽 참조.

다하지 않았는데, 어찌 좋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만일 내 말대로 된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자 대답하길 “폐하께서 서거하시면 첩은 순장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종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재인은 평상시 모아두었던 것을 모두 宮中에 나누어 주고 황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휘장[經幄]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다. 당시 嬪媛들은 비록 평소 재인이 황제를 독차지한 것을 시샘하였으나 도리어 모두 재인을 의롭게 여기고 감동하였다. 宣宗이 즉위하여 그녀의 절개를 가상히 여겨 賢妃로 추증하고 端陵의 柏城에 안장하였다.

### 宣宗元昭臯皇后

宣宗의 元昭皇后 臯氏는 그 가계를 알지 못한다. 어렸을 때 [藩邸]에 들어가 가장 총애를 받았다. [선종이] 즉위하자 美人이 되었다. 大中 연간(847~859)에 흥거하니 昭容으로 추증되었는데, 翰林學士 蕭寘에게 조서를 내려 그 무덤의 묘지명을 짓게 하니 鄆王·萬壽公主를 낳은 일을 갖추어 기록하였다. 이후 夔[王]·昭[王]<sup>54)</sup> 등 5왕은 內院에 거주하였지만 宣宗은 홀로 出閣하였다. [운왕이] 즉위하니 바로 懿宗이다. 外[廷]에서는 황제가 장자가 아니라고 자못 의심하였다. 소치가 銘辭를 꺼내어 外廷에 보이자 마침내 해소되었다. 황제가 昭容을 皇太后로 追冊하고 尊諡를 올렸으며 조서를 내려 황태후의 2등 이상 친족들<sup>55)</sup>에게 모두 관직

54) 『구당서』 권175, 夔王滋傳, “宣宗第三子也. 會昌六年封, 咸通四年薨”(453쪽); 『구당서』 권18下, 선종본기, 대종 5년(851) 정월 조, “甲戌, 制皇第七子洽封懷王, 第八子訥爲昭王, 第九子汶爲康王”(628쪽).

55) 『신당서』 권48, 百官志3, “凡親有五等, 先定於司封, 一曰皇帝周親·皇后父母, 視三品. 二曰皇帝大功親·小功尊屬, 太皇太后·皇太后·皇后周親, 視四品. 三曰皇帝小功親·緦麻尊屬, 太皇太后·皇太后·皇后大功親, 視五品. 四曰皇帝緦麻親·袒免尊屬, 太皇太后·皇太后·皇后小功親. 五曰皇帝袒免親, 太皇太后小功



을 주었고[官] 宣宗廟에 신주를 합사[配]하였으며 그녀를 위해 능을 만들어 慶陵이라 하고 宮寢을 두었다.

### 懿宗惠安王皇后

懿宗의 惠安皇后 王氏 또한 내력을 알 수 없다. [의종] 咸通 연간(860~873)에 貴妃로 冊號되었고 普王을 낳았다. [함통] 7년(866) 흥거하였다. 14년(873) 보왕이 즉위하니 바로 곧 僖宗이었다. 皇太后로 추존하고 책서를 내려 시호를 올렸으며 懿宗廟에 신주를 합사[附]하였고 그 능원을 壽陵이라고 하였다. 황태후의 시마친[總] 이상 친숙에게 황제가 모두 관직을 주었다[官].

### 懿宗郭淑妃

의종의 淑妃 郭氏는 어려서 鄆王의 [藩]邸에 들어갔다. 宣宗은 재위시에 나이가 많았음에도 사람들이 태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鄆]王은 적장자여서 外宮에 거처하였는데, 마음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 하였다. 그녀가 좌우에서 시봉하며 起居를 보살폈는데 [慰安], 마침내 아무 탈이 없었다. 딸을 낳았고 [아이가] 아직 능히 말하지 못할 시기에 홀연히 “살았다”라고 말하니 [鄆]王이 경이롭게 여겼다. [운왕이] 즉위하여 그녀를 美人으로 삼았다가 淑妃로 進拜하였다.

딸은 同昌公主인데 韋保衡에게 시집갔다. 위보형은 內宅에서 살았는데, [이에 대해] 숙비는 공주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주연[娛飲]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은 [숙비가] 위보형과 사통[亂]한다고

卑屬, 皇太后·皇后總麻親, 視六品. 皇帝親之夫婦男女, 降本親二等, 餘親降三等, 尊屬進一等, 降而過五等者不爲親. 諸王·大長公主·長公主親, 本品. 嗣王·郡王非三等親者, 亦視五品. 駙馬都尉, 視諸親”(1250쪽). 아울러 方東明, 「唐代外戚研究」, 西北大學 碩士論文, 2011, 27~29쪽 참조.

떠들었지만 그 단서를 얻지는 못하였다. 僖宗이 즉위하자 위보형은 다른 죄로 어떤 사람에게 적발되었고 게다가 옛날의 비방까지 더해져 마침내 좌천되어 죽었다. 숙비는 여전히 금중에 살았다. 黃巢의 난 때 천자가 蜀으로 가면서 倉卒하였는데 숙비는 [운왕을] 따라잡지 못하고 마침내 민간에 낙오되었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 懿宗恭憲王皇后

의종의 恭憲皇后 王氏는 그 출신이 지극히 미천하였다. 咸通 연간(860~873)에 後廷에 들어가서[列] 은총을 입어 壽王을 낳고 졸하였다. 수왕이 즉위하니 곧 昭宗이었다. 황태후로 追號하고 시호를 올렸으며 懿宗室에 신주를 합사[附]하였고 바로 원래의 장지를 安陵이라 불렀으며 태후의 동생 [王]環을 불러 관직[官]을 주었다.

[昭宗] 景福 연간 초 왕환의 지위와 직임[位任]이 점점 중해졌고 황제도 [그가] 外家여서 의지하였다. 中尉 楊復恭이 시기하여 表를 올려 黔南節度使에 임명하였다. 왕환이 번진으로 가면서 吉柏江을 지날 때 양복공이 은밀히 楊守亮에게 그 가인[家]을 모두 죽이게 하였다.

### 昭宗何皇后

昭宗의 皇后 何氏는 梓州 사람으로 가문[系族]이 현귀하지 않았다. 황제가 壽王이었을 때 그녀가 시봉하였는데, 아름답고 지혜로워 총애를 후하게 받았다. [소종이] 즉위한 후 淑妃로 삼았다. [소종이] 華州로 사냥하러 갈 때 따라갔는데, 조서를 내려 皇后로 책립하였다.

光化 3년(900) 황제가 사냥 갔다가 밤에 돌아오자 황후가 德王<sup>56)</sup>을 번

56) 『구당서』 권20, 昭宗本紀, 天復 원년(901) 정월 조, “甲申朔, 昭宗反正, 登長樂門樓, 受朝賀. 班未退, 孫德昭執劉季述至樓前, 上方詰責, 已爲亂棒擊死, 乃尸之於市. 乙酉, 制以孫德昭檢校司空, 充靜海軍節度使. 丙戌, 宰相崔胤進位司空. 己丑,

저[邸]로 돌아가게 하였다. [덕왕이 도중에] 劉季述을 만났는데, [유계술 이] 덕왕을 紫廷院에 머물게 하였다. 다음날 유계술 등이 덕왕을 끼고 군대를 도열시키고 百官을 소집하여 황제에게 內禪을 강요하였다. 황후는 賊臣이 天子를 해할 것을 우려하여 즉시 璽를 유계술에게 주었으며 황제와 함께 東宮에 유폐되었다.<sup>57)</sup> 賊이 평정되자 제위를 회복하였다.

天復 연간(901~903) 황제를 따라 鳳翔에 주둔하였을 때 李茂貞이 황제에게 군대를 위로하도록 청하여 어쩔 수 없이 황후가 황제를 따라 南樓로 갔다. 때마침 朱全忠이 황제를 핍박하여 동쪽으로 데려가자 황후가 황제에게 말하길 “이제부터 大家의 부부가 賊의 손에 몸을 맡기게 되는 군요”라고 하고 눈물을 자주 흘렸다. 황제가 도망치고 파천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여서 권력을 모두 잃었고 좌우는 모두 悍逆한 庸奴였으므로 황후가 음식과 의복을 시중드는 일로 [황제의] 신변을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낙양에 이르자 황제가 우울해하고 근심하면서 황후와 서로 마주보았고 언제 죽을지를 몰랐다. 얼마 후 [황제는] 시해를 당하였다.

哀帝가 즉위하여 皇太后로 높였으나 궁중에서 감히 곡하지 못하였고 積善宮으로 옮겨 거처하니 積善太后라 불렸다. 황제가 장차 천하를 선양하려 하였고 태후 역시 해를 입었다.<sup>58)</sup> 이전에 蔣玄暉가 주전충을 위해

朱全忠械程巖，折足檻送京師，戮之於市。制皇太子裕降爲德王，改名祐”(771쪽).

57) 『구당서』 권20上, 昭宗本紀, 光化 3년(900) 11월 조, “何皇后遽出拜曰‘軍容長官護官家，勿至驚恐，有事取軍容商量’季述即出百官合同狀，曰‘陛下倦臨寶位，中外羣情，願太子監國，請陛下願養於東宮’帝曰‘吾昨與卿等歡飲，不覺太過，何至此耶!’皇后曰‘聖人依他軍容語’即於御前取國寶付季述，即時帝與皇后共一輦，并常所侍從十餘內人赴東宮。入後，季述手自扃鎖院門，日於窗中通食器。是日，迎皇太子監國，矯宣昭宗命稱上皇”(766쪽). 관련 내용은 임사영, 『황제들의 당제 국사』, 399쪽 참조.

58) 『자치통감』 권265, 소종 천우 원년(904) 8월 조, “壬寅，帝在椒殿，[호삼성 주; 椒殿，皇后殿也。史炤曰‘椒殿亦猶椒房之稱]玄暉選龍武牙官史太等百人夜叩宮門，言軍前有急奏，[호삼성 주; 軍前，謂西討行營軍前也]欲面見帝。夫人裴貞一開門

九錫을 얻어내려 입궁하여 유세하자 태후는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장현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면서 모자의 목숨을 부탁하였다. 宣徽使 趙殷衡이 주전충에게 참언하기를 “장현휘 등은 石像을 새겨 積善宮에 묻고 장차 唐을 부활시키려 한다”라고 하였다. 주전충이 분노하여 마침내 태후를 교살하게 하고 추한 명호를 주어 庶人으로 폐위하였다.

---

見兵, 曰 ‘急奏何以兵爲?’ 史太殺之, 玄暉問 ‘至尊安在?’ 昭儀李漸榮臨軒呼曰 ‘寧殺我曹, 勿傷大家!’ 帝方醉, 遽起, 單衣繞柱走, 史太追而弑之. [호삼성 주; 年三十八] 漸榮以身亦殺之. 又欲殺何后, 后求哀於玄暉, 乃釋之. [호삼성 주; 何后祈生於 蔣玄暉 而卒以玄暉死, 屈節以苟歲月之生, 豈若以身殉昭宗之不失節也!] 癸卯, 蔣玄暉矯詔稱李漸榮·裴貞一弑逆, 宜立輝王祚爲皇太子, 更名祝, 監軍國事. 又矯皇后令, 太子於柩前即位. 宮中恐懼, 不敢出聲哭. 丙午, 昭宣帝即位, 時年十三”(8633쪽).